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746 및 제747호
- 다. 제출일자 : 2019. 5.31
- 라. 회부일자 : 2019. 6. 3

II.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1. 세입

- 세입예산액은 23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38억 8천8백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13억 9천2백만원, 미수납액은 123억 6천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23,300	33,888	21,392	12,366

2. 세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29억 6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7억 6천5백만원, 예비비 2억 3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849억 6천만원으로,
- 793억 4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700억 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3억 1백만원, 집행잔액은 55억 3천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당초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지출					
72,963	11,765	232	84,960	79,304	70,003	9,301	5,535

2. 세 출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 비 비	전용*	변경사용**	
72,963	11,765 232	- -	- -	84,960

*.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액
84,960	79,304	70,003	9,301	122	5,535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8년도 예산액 849억 6천만원, 전년도 이월액 117억 6천5백만원, 예비비 2억 3천2백만원을 합하여 총 849억 6천만원임.
- 예산집행은 지출원인행위액 793억 4백만원 중 700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93억 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천2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 3천5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6.5%).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1): 총 2건, 1억 2천만원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는 총 2건에 1억 2천만원을

1)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전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2건			1,657	△120	120	1,657
환경보호 일반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 비	1,250	△100		1,15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2 감리비			100	100
환경보호 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 비	377	△20		357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 비	30		20	50

○ 변경사용2): 총 3건, 1억원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3건, 1억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3건			4,234	△100	100	4,234
환경보 호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870	△30		840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401-02 감리비			30	30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84	△40		944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1 사무관리비	787		40	827

2)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기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68	△30		738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825		30	855

○ 명시이월: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 총 10건, 93억 1백만원

	당초 준공예정일	이월 후 준공예정일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2019.06.13	2019.09.08	6억 4천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2019.07.26	좌동	4천만원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9.04.17	2019.05.24	13억 1천7백만원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8.12.31	2019.12.31	38억 2천3백만원
-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2019.12.25	좌동	17억 2천1백만원
-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018.12.31	2019.06.20	1억 2천7백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018.12.31	2019.03.31	8억 8천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시민참여)	2018.11.30	2019.05.15	3억원
-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2019.12.30	좌동	2억 3천2백만원
- 자연(형) 호안 복원	2019.06.25	좌동	2억 2천만원

○ 예비비: 총 1건, 2억 3천2백만원

- 소송비용 2억 3천2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 : 총 2건, 1억 2천2백만원

-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7백만원

- 공공 예술공간 조성(경상)

115백만원

○ 집행잔액: 55억 3천5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5억 3천5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천2백만원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6천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44억 5천3백만원

3.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시에서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독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둔치 및 화장실 청소,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자연(형) 호안 복원 4개 사업 대하여 22억 6천4백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전용	예산 변경	추가경정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도이월	집행 잔액
독섬전망문화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509	1,088	△20		830	2,407	721	1,317	368
둔치 및 화장실 청소	6,793			40	354	7,187	6,767		42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3,323		100		730	4,154	235	3,823	97
자연(형) 호안 복원	4,873				350	5,223	4,878	220	125

V. 검토 의견

가. 세 입

□ 세입총괄(※결산서 p. 9)

-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33억원으로 338억 8천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3%인 213억 9천2백만원이며, 123억 6천6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액 123억 6천6백만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주)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수상업체와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임.

〈표 1〉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나)+(다)-(가)	미수납 발생사유
	32,084	19,588	130	△12,366	
공유재산 임대료	13,810	12,782		△1,028	• 전망카페 사용료 분할납부분 미납(57백만원) 및 매점임대료(737백만원), 자전거대여점(235백만원) 경영악화 따른 체납 등
하천사용료	4,534	4,134		△400	• 수상업체(서울마리나 등)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변상금	110	102		△8	•
과태료	276	196		△81	• 최종납기일 미도래 및 납세 태만
그외수입	2,624	1,206		△1,418	•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구상금 체납
지난연도 수입	10,730	1,168	130	△9,432	• 세빛섬 영업공간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7,145백만원) 및 수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체납 등(2,418백만원)

-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주)플로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³⁾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주)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2014년 3월에 제정⁴⁾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음.



3)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4)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2〉 연도별 지체상금 부과취소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체상금	사업정산 (감액)	잔 액 (이월)	비 고
2015년	9,192	921	8,271	매년 사업 완료후, 외부 공공성 심의 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함
2016년	8,271	444	7,827	
2017년	7,827	253	7,574	
2018년	7,574	429	7,145	

- (주)플로섬에서는 2015년부터 공익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해 오고 있으나,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임.
- 이밖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전망카페와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임. 이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여 낙찰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사용료를 분할납부하지만 일정기간(성수기) 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것임.
- 이로 인해, 운영업체의 서비스품질 저하와 중도포기에 따른 시민불편 등이 가중되고 있어, 사용료 분할납부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 (주)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둔치	수상	합계(가산세 제외)
2012년	15	-	15
2013년	41	22	63
2014년	43	117	160
2015년	45	108	153
2016년	48	55	103
2017년	50	113	163
2018년	52	127	179
총계	294	542	836

-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2016, 2017 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⁵⁾에서는 (주)서울마리나를 대상으로 ‘하천사용료 완전 납부를 위한 방안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따라서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주)서울마리나는 2011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완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완전 납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나. 세 출

□ 세출총괄(※결산서 p. 15)

-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29억 6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17억 6천5백만원, 예비비 2억 3천2백만원을 합한 총 849억 6천만원임.
- 예산집행은 793억 4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700억 3백만원을 지출하고, 93억 1백만원(사고이월 93억 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55억 3천5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6.5%).

〈표 4〉 최근 3년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2018	72,963	11,765	232	84,960	79,304	70,003	9,301	5,535
2017	80,954	9,966	922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2016	67,578	7,249	816	75,643	65,789	61,915	9,967	3,761

□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23)

- 2018회계연도 전용은 총 2건, 1억 2천만원으로 주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과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표 5〉 2018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 액	전용내역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전용 월일	
총 2건				△120	120		
환경보호 일반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유 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50	△100			1,15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2 감리비			100	2018. 09.20	100
환경보호 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 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78	△20			358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		20	2018. 11.12	50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강공원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한 감리용역을 위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의 감리비를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는데,
 - 이는 본 사업의 감리비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2018.9)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2018.9)한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임.
- 또한, 여의도 물빛무대의 노후배관의 신규설치를 위해,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를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임.
 - 여의도 물빛무대⁶⁾는 2010년 조성 이후, 매년 일정수준(3천만원)의

6) 조성기간 : '09. 4. ~ '10. 5.
 사업비 : 47억원
 위치 :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하류
 규모 : 수상 2층 577.82㎡ (실내무대 200석, 야외둔치 2,200석)

유지관리 비용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관시설이 노후화되었던 점은 시설 관리 혹은 당초 예산계획 수립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변경사용**(※결산서 p. 24)

- 2018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3건, 1억원으로 동일 단위사업내 공공 운영비에서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음.

〈표 6〉 2018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3건				△100	100	
환경보 호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870	△30		840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401-02 감리비			30	30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984	△40		944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1 사무관리비	787		40	827
환경보 호일반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768	△30		738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825		30	855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감리비는 외벽공사(1천2백만원)와 리모델링(1천8백만원) 감리용역을 위해 동일사업의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사무관리비는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동일사업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음.

- 이와 같이 불가측의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탄력적이고도 신축적인 집행을 위해 변경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의회가 심의 확정된 예산을 상습적으로 변경사용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 해당 없음

□ 사고이월 (※결산서 p. 77)

-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 93억 1백만원으로, 전년 (97억 5천4백만원) 대비 4억 5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하지만, ‘2017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사고이월이 많음을 받았⁷⁾음 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10.6% → 10.9%)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음. 또한 다음연도 집행실적(2019.05.31. 기준) 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임.

〈표 7〉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현 액	지출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집행 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19.5.31 기준)	
							지출액	지출 잔액

7) 사고이월액 97억 5천4백만원은 한강사업본부 총 예산(예산현액 918억 4천2백만원)의 10.6%로, 향후 사고이월 발생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현 액	지출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집행 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19.5.31 기준)	
							지출액	지출 잔액
전체		29,387	17,943	0	9,301	2,143	2,316	6,985
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 유지관리	합계	1,884	453		640	791		640
	시설비	1,866	453		630	783		630
	감리비	18			10	8		10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726	3,488		40	198		40
뚝섬전망문화복합시 설 운영 및 관리	합계	1,914	233		1,317	364	942	375
	시설비	1,884	233		1,292	359	933	359
	감리비	30			25	5	9	16
한강공원 주차장 운 영	합계	4,119	210		3,823	86		3,823
	전산 개발비	150			150			150
	시설비	3,869	210		3,575	84		3,575
	감리비	100			98	2		98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386	1,429		1,721	236	511	1210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275	995		127	153	97	30
한강공원 나들목 증 설 및 개선	시설비	4,072	3,149		880	43	498	382
한강공원 나들목 환 경개선(시민참여)	시설비	1,600	1,198		300	102	268	32
여의도 샛강 생태거 점 조성	시설비	2,200	1,923		232	45		232
자연(형) 호안 복원	시설비	5,210	4,865		220	125		220

- 이 중,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이월이 발생하였음. 이는 추경예산이 2018년 하반기에 확보되어 연내집행 완료가 불가피한 점은 인정됨. 다만, 일부 사업에서 이월금 전액이 다음연도인 2019년 5월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월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전용	예산 변경	추가경정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 도이월	집행 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19.5.31 기준)	
										지출액	지출 잔액
총 계	15,498	1,088			2,264	18,971	12,601	5,360	1,010	942	4,418
뚝섬전망문화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509	1,088	△20		830	2,407	721	1,317	368	942	375
둔치 및 화장실 청소	6,793			40	354	7,187	6,767		42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3,323		100		730	4,154	235	3,823	97		3,823
자연(형) 호안 복원	4,873				350	5,223	4,878	220	125		220

-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시설비, 관리비)은 해당 시설의 외벽보수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9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3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천7백만원을 사고이월, 3억 6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본 사업은 절대공기부족과 사전절차 이행지연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작년에도 시설비를 명시이월⁸⁾(10억 8천8백만원)한 바 있음.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전산개발비, 시설비, 관리비)은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41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38억 2천 3백만원을 사고이월, 8천6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본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본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업체선정과정에서 행정상의 실수로 우선협상자의 순위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8) 운영개선 추진계획 수립이 지연됨(당초 2017.6 →변경 2017.10)에 따라 운영개선 기본계획(2018. 6 준공 예정) 및 시설개선 공사가 다음연도로 연기

□ 예비비 지출 : 2억 3천2백만원(※결산서 p. 27)

-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2억 3천2백만원으로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 소송배상금 지급의 경우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되는 바임.
- 다만, 2018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음. 이는 조례¹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표 9〉 2016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지출 사유
2016년	816	•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등 2건
2017년	922	• 망원초록길 조성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금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변 사고로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소송 판결금
2018년	232	•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 집행잔액(※결산서 p. 16)

-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5억 3천5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6.5%)으로

9) 예비비 지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기별 보고를 이행하여 시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 적절한 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줄 것을 권고함.

10)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년도 80억 1천1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8.7%)에 비해 24억 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 절감집행 등임.

〈표 10〉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현액	84,960	91,842	75,643	65,121	64,685
불 용 액	5,535	8,011	3,761	5,235	5,030
불용률(%)	6.5	8.7	5.0	8.0	7.8

1)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표 11〉 공사, 설계비 낙찰차액 발생 및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액	낙찰 액	집행 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현황	
					사용액	사용내역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1,888	1,676	1,821	212	145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물 보수 정비 공사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1,051	911	1,023	139	111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161	1,003	1,160	158	157	자전거 트랙 조성공사

- 「한강사업본부 이용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과 같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고 발생한 낙찰차액을 물량 증감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소진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례에 해당됨. 또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인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의 자전거 트랙 조성공사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¹¹⁾에 저

1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

측되는 경우로, 향후 낙찰차액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금액을 목적 외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

〈표 12〉 불용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전 용	추가경정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 도이월	집행 잔액
총계	15,498	1,088		2,264	18,971	12,601	5,360	1,010
특성전망문화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509	1,088	△20	830	2,407	721	1,317	368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유지관리	3,348		△100		3,248	1,781	640	828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막대한 이월과 집행잔액을 발생한 사례임. 이는 예산관리 및 운용 소홀이 불용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 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